

급여 및 수당 지급규칙

- [제정 2009. 7. 8]
- [개정 2009. 10. 1]
- [개정 2010. 5. 17]
- [개정 2010. 6. 1]
- [개정 2010. 12. 29]
- [개정 2012. 3. 19]
- [개정 2012. 12. 31]
- [개정 2013. 3. 11]
- [개정 2013. 11. 25]
- [개정 2014. 2. 27]
- [개정 2014. 5. 23]
- [개정 2014. 12. 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여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원의 연봉 및 수당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11.25)

②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정관, 급여규정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연도”라 함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임직원에게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라 함은 기본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산출한 1개월분의 금액을 말한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산출한 1개월분의 금액을 말한다.

6. “기타금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상의 복리후생비와 성과에 따라 추가 또는 감액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말한다.(신설 2013.3.11)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채용, 퇴직, 근로계약 등 연중에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기간내에서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제5조(연봉계약)**
- ① 연봉계약은 계약대상자의 인적사항, 연봉계약기간, 연봉계약금액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연봉계약은 원장과 피임용자인 직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연봉계약서”에 의하여 정한다.
 - ③ 연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년도 연봉액을 지급하고 연봉계약 체결 후 소급 적용하여 정산한다.

- 제6조(기본연봉의 책정)**
- ① 재직직원의 연봉은 전년도의 성과 및 임금인상률에 따른 인상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기본연봉은 중식보조비 및 연구수당, 자녀양육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0.6.1)
 - ③ 신규직원의 기본연봉은 인사규정 제4조 및 인사규칙 제11조에 따라 직급 및 경력을 환산한 후 <별표 1>의 “직급별 기본연봉표”에 따라 책정한다.

- 제7조(성과급)**
- ① 원장은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성과급은 경영평가성과급과 기타성과급으로 한다.
 - ③ 성과급은 매년 진흥원의 경영실적,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성과급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원장이 정한다.

- 제8조(직무연차급)**
- ① “직무연차급”이라 함은 매년 정기 임금인상과 별도로 직원의 근속에 따른 기본연봉 상승분을 말한다.
 - ② 직무연차급은 개인별 기본연봉의 1.5%를 기본으로 하되 직급별 적용비율은 <별표 2>의 “직급별 직무연차급 기준표”에 따른다.

- 제9조(승진시의 연봉채정)** ① 승진임용된 직원의 급여는 승진된 직원의 기본연봉을 고려하여 재확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재확정은 별도로 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①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수당 : 연차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2. 기타 법률 및 원장이 정하는 수당
 ② 수당은 매년 인건비 및 관련 예산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항목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연차휴가근로수당)** ① 직원이 복무규칙에서 정한 연차 휴가일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한 내에 부여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수당은 매년 12월, 퇴직금 지급 시에 각각 지급한다.(개정 2012.12.31)
 ③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 × 1/209 × 8 ×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한다.(개정 2014.12.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에도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간외 근무수당)** ①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실적급으로 급여규정 제6조에 규정한 지급일에 시간외 근무수당 또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0.5.17)
 ② 시간외 근무시간은 복무규정 제10조에 규정한 근무시간종료 후부터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한다. 단, 조찬회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기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30분 전까지를 시간외 근무로 인정한다.(개정 2009.10.1, 2010.5.17)
 ③ 시간외 근무수당의 계산은 월 통상임금 × 1/209 × 1.5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하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은 월 15시간 내에서 최대 500,000원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2.3.19, 2013.3.11, 2014.2.27)
 ④ 제1항의 시간외근무 지시 및 확인은 복무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되 근무지시 및 확인을 받지 않은 시간외근무는 무효로 한다.
 ⑤ 각 부서장은 당월 부서원의 시간외 근무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당월 시간외수당 지급일 전까지 급여담당부서에 승인을 요청한다.(개정 2010.5.17, 2010.6.1)
 ⑥ (삭제 2010.12.29)

제13조(직책활동지원비) (삭제 2010.12.29)

제14조(전일제교육훈련자의 급여) 국내외 전일제교육훈련자에 대하여는 기간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한다.

제15조(수당 등의 신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당을 신설할 수 있다.

제16조(국외근무자의 급여) 국외근무자의 급여는 급여규정 제4조 급여체계에 의한 급여와 해외근무수당, 주택수당, 가족수당, 기타 법률 및 원장이 따로 정하는 수당 등 제수당을 말한다.

① “해외근무수당”이라 함은 국외근무자에게 주재지의 물가 및 생활수준을 참작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월별 지급액은 환율의 변동을 고려하여 분기별 파견국가 평균환율을 고려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12.31)

② “주택수당”이라 함은 국외근무자의 주택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상한 기준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14.12.31)

③ “가족수당”이라 함은 국외근무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④ “국외근무자 자녀학자금”이라 함은 국외근무자 자녀가 파견국가에서 취학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재외공관 회계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국외근무자 자녀학자금” 지급 요청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과 증빙서류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5.23)

제17조(국외근무자 급여지급기준) ① 국외근무자의 급여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급여는 현지화 또는 미화로 지급한다. 다만, 형편에 따라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본인이 지정하는 본국의 거주자에게 국내 급여규정에 의한 급여 한도내에서 원화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족수당 지급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의한다.

1. 가족수당은 가족이 주재국에 도착한 날 또는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한다.
2. 국외근무자의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또는 기타 사유로 지급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지급한다.

제18조(현지채용원의 급여) 국외근무자가 채용한 현지 채용원에 대한 급여는 주재국의 일반 지급기준과 예산범위내에서 당해 사무소장이 결정하여 정한다.

제19조(국외근무자 의료보험) ① 국외근무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

1. 국외근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현지 의료보험
 2. 주재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그 가입이 강제된 제보험
- ② 전항 각호의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는 주재국 기준에 의거 처리한다.

제20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9.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 제3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 3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3.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3.19, 2013.3.11, 2014.2.27)

직급별 기본연봉표

(단위 : 원)

직 급	기본연봉		비 고
	최소	최대	
1 급	79,676,830	95,937,050	
2 급	52,692,160	83,671,700	
3 급	37,927,040	54,846,310	
4 급	26,887,000	45,289,770	
5 급	21,000,000	26,400,000	

급여 및 수당 지급규칙

<별표 2>

직급별 직무연차급 기준표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가산율	1.28%	1.28%	1.38%	1.94%	1.70%

<별표 3> (개정 2014.5.23, 2014.12.31)

해외근무 수당표

구 분	1급	2급	3급 이하
미 국	US\$2,866	US\$2,639	US\$2,412
유 럽	EUR2,653	EUR2,421	EUR2,211

<별표 4> (개정 2014.5.23, 2014.12.31)

주택수당 상한 기준표

구 분	1급	2급	3급 이하
미 국	US\$2,900	US\$2,700	US\$2,500
유 럽	EUR2,175	EUR2,025	EUR1,875

<별표 5> (개정 2014.5.23)

가족수당표

적용범위	부양가족	지 급 액	
국외근무자	배우자	해외근무수당 월지급액의 4분의 1 한도	
	자녀	미국	1인당 US\$60
		유럽	1인당 EUR45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5.17)

연봉계약서

임 용 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피임용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상기 피임용자의 연봉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기본연봉 : 일금 원정 (₩)
- 연봉월액 : 일금 원정 (₩)

기본연봉외 급여의 지급은 급여규정과 급여 및 수당지급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임용자 :

피임용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인)

_____ (인)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4.5.23)

국외근무자 자녀학자금 신청 산출근거

번호	내역	해당기간	금액	비고
1		'00.00.00~ 00.00.00		
2				
3				
4				
5				
6				
7				
8				
9				
10				
총 신청금액				

◆ 유의사항

1. 지원대상인 학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학비에 포함되는 육성회비 또는 학교 운영지원비의 경우 자녀 1인당 연간 미화 3,000달러(월평균 미화 250달러) 이내의 금액을 의미
2. Entrance Fee, Admission Fee, Entry Fee 등 입학금 명목의 금액과 이머전 수업료 등 학교 정규교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동일 교육과정을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다시 교육하는 경우 포함), P.T.A 회비, 도서관비, 통합비 및 교재비 등은 학비의 범위에서 제외
 - * 다만 이머전수업료, 영어특별(강화)교육 등이 정규교과목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상급학년으로 승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업료를 학비로 인정